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0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허성무 · 이정현 · 박선원  
곽상언 · 김정호 · 이기현  
정혜경 · 윤준병 · 김종민  
김남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4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각각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4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제16조제4항 후단 중 “60일”을 “40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